

受 信 : 大田廣域市議會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 委員長

題 目 : 大田廣域市生活保護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
書面 動議書 提出

위의 大田廣域市生活保護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관한 書面同議書를 大田廣域市議會 會議規則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別添과 같이 提出합니다.

添 附 : 大田廣域市生活保護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관한 動議書 1부 끝.

動議者 : 金善奎 議員 

외 1 人

(贊成者 署名 別添)

大田廣域市生活保護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관한 動 議 書

1. 提 案 理 由

- . 生活保護法등 關聯規定에 依據 積立된 生活保護基金의 效率的인 運用을 위하여 基金管理 公務員을 具體的으로 指定하고
- . 基金運用狀況의 透明性 保障을 위하여 基金의 決算 및 報告에 관한 內容을 細部的으로 規定키 위함

2. 主 要 骨 子

- . 基金은 高率의 金融商品으로 預置토록 함 (案 第3條)
- . 基金管理 公務員을 具體的으로 指定함 (案 第4條)
- . 基金의 決算 및 報告에 관한 事項을 新設함 (案 第5條)
- . 이 條例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則으로 定하도록 함 (案 第6條)

3. 檢 討 事 項

가. 關 聯 法 規

- . 生活保護法 第37條 및 同法施行令 第29條, 第30條
- . 地方財政法 第110條 및 同法施行令 第156條

나. 檢 討 內 容

- . 生活保護對象者들의 保護機會 擴大를 위하여 設置·運用되고 있는 本 生活保護基金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는 基金管理의 責任所在를 분명히 할 수 있는 地方財政法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管理公務員을 指定하여야 하며
- . 基金運用狀況에 대한 透明性 確保를 위하여 地方財政法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決算 및 報告에 관한 事項을 本 條例에 規定토록 함이 妥當함.

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의 내용중 “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”을 “고율의 금융상품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3항의 내용중 “시장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 (기금관리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 운용관 : 보건사회국장
2. 기금 출납원 : 사회계장

제5조 (결산 및 보고)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.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금 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 (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) ①(생략)</p> <p>② 장학기금은 세입·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방법으로 예치한다.</p>	<p>제7조 (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기금의 관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조성된 기금은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치하고,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, 지출등에 관한 관리대장과 예치증서를 비치하여야한다.</p>
(신 설)	<p>제9조 (기금관리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운용관 : 보건사회국장 2. 기금출납원 : 사회계장
(신 설)	<p>제10조 (결산 및 보고) ①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 라한다.)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u>제9조 (시행규칙) (생략)</u>	<u>제11조 (시행규칙)(현행과 같음)</u>